

특 허 법 원

제 2 1 부

판 결

사 건 2018나1565 손해배상(기)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제이에프티

대표이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

담당변호사 강명구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주식회사 아이다코리아

대표이사 B

2. B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경

담당변호사 이정도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4. 선고 2017가합502502 판결

변 론 종 결 2018. 12. 6.

판 결 선 고 2019. 1. 10.

주 문

1.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원고

가. 청구취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나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2. 10.부터 2018. 5. 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들의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경란

 판사 진현섭

 판사 김광남